



11월 30일(목) 11:30(행사종료) 이후 사용

| | | |
|----|---|---|
| 비고 | * 모두말씀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 |
| 담당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과장 이진민, 사무관 오연순 (02-6050-3291, 3292) |
| | 국무조정실 기획과제과 | 과장 한동희, 사무관 지사향 (044-200-2911, 2912)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 과장 양청삼, 연구관 김광의 (02-2110-2830, 2834) |
|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과장 주홍민, 사무관 김원태 (02-2100-2530, 2971) |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과장 김대자, 사무관 김종락 (044-203-4120, 4515) |
|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과장 정용식, 사무관 정재원 (044-201-4307, 4315) |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과장 정윤순, 서기관 오성일 (044-202-2420, 2402) |
|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과 | 과장 이태원, 서기관 박도순 (042-481-4555, 4599)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제 -

- ▶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마련
- ▶ 핀테크 분야 개별 규제면제, 시범인가 등 금융혁신지원특례법 제정 등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30일(목) 오전, 경기도 수원시 광고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아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 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고1)

* (참석) ▲민간(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소장, 문경록 (주)뉴지스탁 대표, 송재근 유콘시스템(주) 대표이사,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유태준 (주)마인즈랩 대표이사, 윤승식 (주)코너스 전략기획본부장, 이승건 (주)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황유경 (주)녹십자랩셀세포치료연구소장, 황태순 (주)테라젠이텍스 대표이사 ▲정부(과기정통부 2차관, 산업부 차관, 중기부 차관, 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방문>

□ 이 총리는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신기술 융합연구 성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자율주행연구실**과 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여 개발품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 재난 대응에 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스로 벽 뚫기, 밸브 돌리기 시연을 참관하고,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정을 청취한 후 직접 시승했습니다.

* (용기원) 경기도와 서울대가 협력하여 설립('08.3.21)된 국내최초의 관·학 연구기관으로 융합기술 연구개발, 융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공동연구 등 진행

** (자율주행차)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주행하는 차량으로 고정밀 디지털 지도, 차량과 사물 간 통신기술 사용 등 첨단기술 집약분야임

***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센서를 통해 다양한 물체 감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에 대응한 스스로 벽 뚫기 및 밸브 돌리기 등 시연 가능

**** (참석)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정택동, 과기정통부 2차관, 산업부 차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논의 >

- 이어서 이 총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먼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보고 받았습니다. (참고2)
-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추진 중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세부추진계획으로,
 -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신산업 분야의 유연한 규제체계의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방향과 그간의 추진상황 및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

-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신제품·신서비스 출시와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 ① **(입법방식 전환)**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 개정
 - △ 네거티브 리스트(지금까지의 방식) → △ 포괄적 개념 정의 △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등으로 확대
 - ⇒ 1차적으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확정(12월말)
 - ② **(혁신제도 도입)**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제품·신서비스의 공식 출시 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
 - △ 시범사업,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용을 허용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 ⇒ **ICT융합, 핀테크 등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분야에 대해 입법화 추진**
 - * (ICT융합)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
 - * (핀테크)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으로 금융규제특례 도입(~'18.6월 발의)
 - * (지역특구)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을 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 도입(~'18.6월 발의)

- 정부는 동 추진방향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문가들과 신산업의 미래 전개모습을 예측하고, 기술발전과 상용화의 단계마다 어떠한 규제는 없애고 어떠한 제도는 새로이 도입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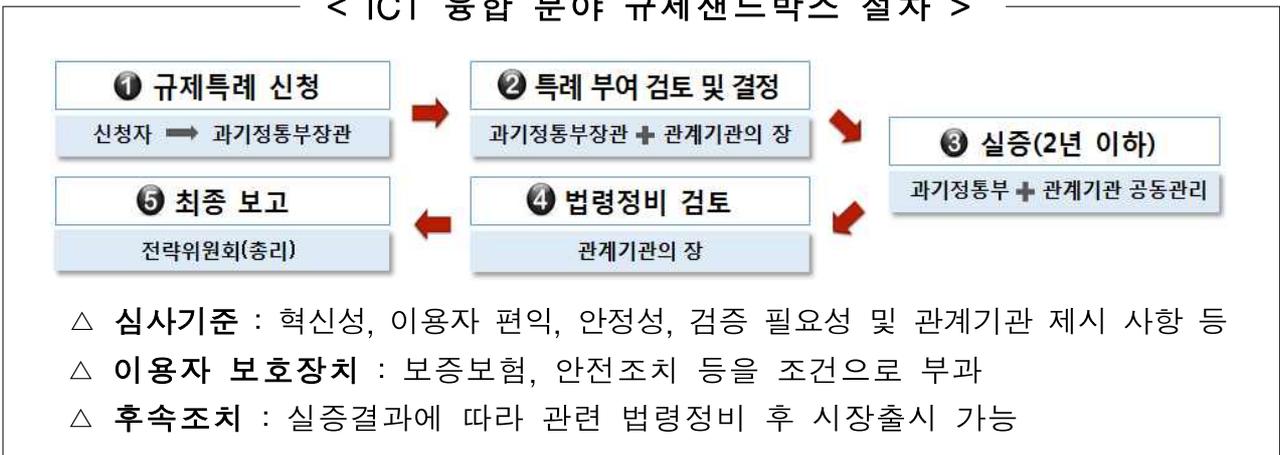
□ 주요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3)

- (과기정통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합니다.

*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

- 또한, 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안전 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ICT 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절차 >



- (산업부) 융합신제품 중 국내 허가·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Track)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 인증 소관부처가 모호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 공신력 있는 해외 인증 취득 시 적합성인증 절차 일부 면제('17.11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

- 아울러, 신산업 분야 우리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전수조사*하여, 규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 우리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등을 통한 규제애로 발굴 중

- (금융위)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와 혁신기업간 제휴를 통한 테스트(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를 활용하여 테스트베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며,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기술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중기부)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특구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새로 신설되는 지역특구에는 그레이존 해소, 실증·사업화 규제 특례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조치를 의무화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 '15년 12월부터 전국 7개 지역에 드론 비행테스트를 위한 시험장소를 확보·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민간의 신기술 수용, 사업화 지원을 위해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했습니다.

* 공공분야(수색, 구조 등)에서 효과적 드론 활용을 위한 특례(인구밀집지역·야간 제한 등) 적용

- 아울러, 미래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차종분류에 없다는 이유로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할 ('18년도) 계획입니다.

○ (복지부) 그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유전자 가위 연구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규제 혁파를 검토하고,

- 미래 유망기술(로봇·AI·IT·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은 신속 도입을 위해 안전성·유효성 문헌 외에 가치성을 고려한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이와 같이, 신산업의 분야별 생태계 여건 및 특례 적용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하여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하여 올해 연말까지 1차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붙임) 1.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행사개요
2.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안건(요약)
3. 부처별 「신산업 규제혁파 및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4.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현황

□ 추진개요

- (일시/장소) '17. 11. 30(목), 09:30~11:20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주요내용)
 -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보고
 - 건의·자유토론

□ 세부 진행**① 현장방문(09:30~10:00,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E동 2층)**

- (참석자) 국무총리, 과기정통부 2차관, 산업부 차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등 5명 내외
- (진행순서) 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현황 청취 → ② 자율주행연구실 방문 → ③ 디지털휴먼연구센터(로봇) 시연·참관 → ④ 자율주행차 시승

**②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논의
(10:00~11:20, A동 16층 회의실)**

- (참석자) 국무총리, 기업인, 교수, 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21명
 - (정 부) 관계부처 차관 등
 - *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중기부, 금융위 6개
 - (민간인) 기업인(7명), 교수(1명), 연구기관 관계자(3명) 등 11명

1. 세계경제 현황과 신산업 대응 현황

◇ 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세계경제 축이 디지털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응이 미흡한 상황

① 4차 산업혁명과 세계경제 변화

- 4차 산업혁명 전개 → 세계경제 축이 정보통신(ICT)중심으로 변화
 -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ICT 기업*이 모두 차지
 - * 1위 애플, 2위 알파벳(구글), 3위 MS, 4위 아마존, 5위 페이스북
- 세계 213개 유니콘기업 중 미국(107개사), 중국(56개사) 기업 차지 ('17.9월 기준)
 - 최근 우리는 최근 3년째 대형 스타트업 배출이 부재
 - * 한국의 유니콘기업은 2개사(쿠팡, 옐로모바일)
 - ※ 유니콘기업 : 기업가치 10억불 이상이며, 설립된 지 10년 이내 스타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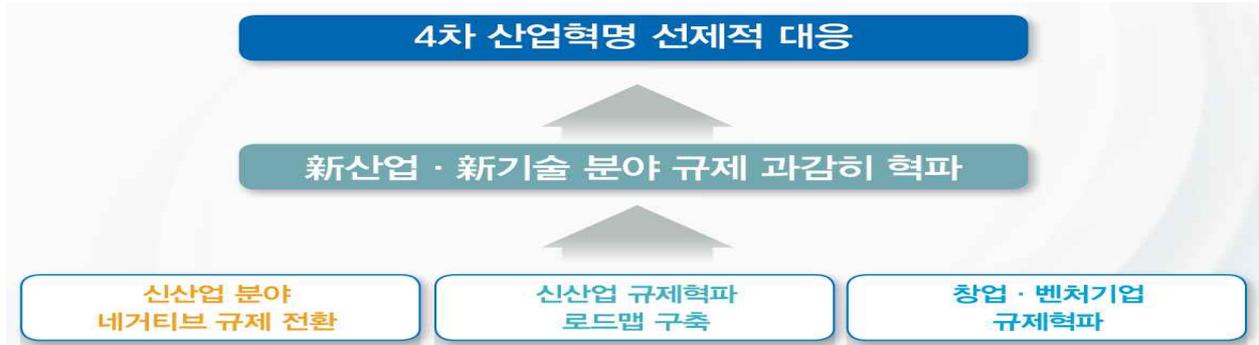
② 우리의 현주소

-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
 - * 제조업 4차 산업혁명 선진국과 4년 격차(2017.5월, 산업연구원)
 - * 4차 산업혁명 적응 준비순위(UBS, '16년) : 45개국 중 25위
 - 1위(스위스), 5위(미국), 12위(일본), 25위(한국), 28위(중국)
- 주된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을 지적
 - *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22.3%) > 전문 인력 및 인재부족 (18.6%) > 4차 산업혁명 이해부족(18.6%) 순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17.5월)
 - * 세계 투자 상위 스타트업 100개 사의 사업모델이 한국 시장에서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40.9%(투자액 기준)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아산나눔재단, '17.7월)

2.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파 추진방향

-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창업·벤처기업 규제혁파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파 추진방향(9.7) >



3.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1. 개념

- (입법방식 전환)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 개정*

* △네거티브 리스트(지금까지의 방식) →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등으로 확대

- (혁신제도 도입)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제품·신서비스의 공식 출시 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

* 시범사업,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용을 허용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 신산업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추진체계 >



2. 추진 상황

[1] 입법방식 전환

- 현재 입법방식 전환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검토 중
 -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 사항을 열거, 나머지 사항은 원칙 허용
 - (포괄적 개념 정의) 기존 법령에 한정적·열거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사업요건 및 기준 등을 포괄적인 개념 정의로 전환
 -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현행 기술수준을 전제로 한 제품 유형분류를 기타유형도 포괄할 수 있게 분류체계 유연화
- 이와 별도로 신산업·신기술 규제혁파 과제를 발굴·검토 중

[2] 혁신제도 도입

-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국내외 사례 조사, 가이드라인 배포, 관계부처 협의 등 도입 우선분야 발굴
 - ICT융합, 핀테크, 산업융합 분야 등에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검토 및 개별법령 개정 추진 협의

※ 국내외 규제샌드박스 기 도입 사례

□(해 외) 영국 핀테크 산업

- 금융규제 당국은 혁신적인 금융 사업을 선정하여 사전 테스트시에 기존 규제를 유예(또는 면제)하고 사후평가로 정식인가 결정

□(국 내) 드론 산업

- 7개 시업공역에서 일부 비행 규제를 면제하여 성능테스트를 허용

3. 향후 계획

- (입법방식 전환) 발굴된 과제는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조정 및 확정(12월 말)

- (혁신제도 도입) 우선 도입 분야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입법화
 - (ICT융합)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추진중* → ICT 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 및 규제 탄력 적용 허용 근거 마련
 - *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
 - (핀테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금융규제 테스트 시행 등 금융 규제특례 도입(~'18.6월 발의)
 - * 현재 금융규제특례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17.12)
 - (지역특구)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개정 준비중 → 지역특구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도입(~'18.6월 발의)

참고 3

부처별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황

- 지금까지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新기술·서비스 분야별 규제혁파를 중점 추진*
* ('16년)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53건 ('17년) 인공지능(AI), 가상현실, 핀테크 등 17건
- 현재, 新산업·서비스 출시 지원을 위한 혁신제도 도입 및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 중

□ 추진내용

- (혁신제도 정비) 현행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1년→2년, 기한내 법제도 정비) 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조건하에서 실증해 볼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 ICT 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절차 >



- △ 심사기준 : 혁신성, 이용자 편익, 안정성, 검증 필요성 및 관계기관 제시 사항 등
- △ 이용자 보호장치 : 보증보험, 안전조치 등을 조건으로 부과
- △ 후속조치 : 실증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정비 후 시장출시 가능

- (넓은제도·관행 혁파)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도록 전자문서법을 개정*하여 종이문서 위주의 업무관행을 혁파
* 법무부와 공동으로 전자문서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11.21), 연내 국회 제출 예정
- 민간분야 액티브X 제거, 실행파일 이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

□ 향후 계획

- 정보통신융합법 입법 지원 및 적용 대상사업 발굴('18.1월~)
- ICT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추진('18.1월~)
※ 네거티브 규제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중('17.10~'18.2, 행정연구원)

금융위원회

□ 신산업·신기술 규제혁파 추진

- (혁신적 금융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으로 공인인증서 불편 해소 → 금투업권 블록체인 공동인증서비스 오픈(10.31)
 - * 거래정보를 중앙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상 여러 컴퓨터에 분산·저장하는 기술
- (인터넷전문은행) 금융·ICT 융합의 상징, 「24시간 365일 손 안의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본격 영업개시 (케이뱅크'17.4.3, 카카오뱅크'17.7.27)
- (클라우드펀딩 확대) 더 많은 기업과 투자자가 클라우드펀딩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전매제한 등 관련 규제 혁파('17.10.31)
- (클라우드 활성화)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이용토록 허용('16.10.)
-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RA)는 투자자문·투자일임 서비스 제공을 허용('17.5.8)
 - 지점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비대면 투자자문계약 체결 허용('16.5.2.)

□ 규제샌드박스 추진

- (1단계) 규제부담 없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험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한 방안부터 우선 시행
 -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비조치의견서 발급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제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기술·아이디어를 테스트(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 (2단계) 현행 법령 내에서 테스트가 불가능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18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 현황

-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 → 새로운 융합 신제품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 부재
-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新제품·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창출 → 산업현장 규제애로 적극 해소 필요

□ 주요내용

- (인증·표준) 적합성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 촉진

* 융합신제품 중 국내 허가·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Track)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제도

- 인증 소관부처가 모호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 취득 시 적합성인증 절차 일부 면제('17.11월~)

- (산업현장 애로 해소)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등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 발굴(~'17.下), 신산업 분야 우리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전수조사* 추진

* 우리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등 현장 규제애로 발굴 중

□ 향후계획

- 기업을 대상으로 적합성인증 설명회, 포럼을 개최하여 제도홍보 강화 및 제도 활성화 추진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할 규제 및 현장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12월~)

□ 신산업 규제혁파 추진

- (드론)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자본금요건 완화 등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 및 비행승인 면제확대(12→25kg), 장기허가제 도입(1→6개월) 등 여건 개선('16.7)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 도입('16.2), 시험운행구역 네거티브 전환을 통한 전국확대('16.1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외) 추진
 - 無핸들·無페달 등 다양한 자율주행차 허용을 위한 특례 마련 및 필수 탑승인원 축소(2인→1인)를 통해 임시운행허가 활성화
 - 자율주행차 운행허가 전 안전성 검토 시 동일차종·동일시스템 차량의 경우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등 검증절차 간소화('17.12)
- (교통 o2o) 심야시간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면허체계 개선*을 통한 콜버스 운행 허용('16) 및 카셰어링 활성화 추진
 - * (이전) 심야시간 면허규정 없음 : 불법논란 → (개선) 심야시간 면허체계 신설
- (자동차분류 네거티브전환) 미래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출시에 대비 자동차분류체계를 유연한 분류체제로 개편(연구용역중, '18년까지 방안 마련)

□ 규제샌드박스 추진

- (드론 시범사업) 유망 드론 업체(58개)의 비행테스트 지원을 위해 전용 시험장소*를 확보하고 신규 활용분야** 시범운영·실증 추진 중('15.12~)
 - * 강원 영월군, 전남 고흥군, 경남 고성군, 충북 보은군, 대구시, 부산시 등 총 7개 지역
 - ** 물품수송, 산림보호·재해감시, 시설물진단, 국토조사·순찰, 통신망활용 등
- (드론 특별승인제) 민간의 신기술·비즈니스모델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사례별로 안전기준 검토 및 야간·가시권밖 비행을 허용하는 승인제 도입
- (적용특례 도입) 공공분야에도 효과적 드론 활용을 위해 인구밀집 지역·야간 제한 등 항공법령 특례(자체규정 필요) 적용('17.11)
 - * ①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②응급환자 장기(臟器) 이송 등 구조·구급 ③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산림 방제(防除)·순찰 등

보건복지부

□ 현황

-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제품화 → 치료 활용 각 단계별 진흥책 추진 중
- 이와 함께, 보건의료 산업·기술이 국민 생명·건강에 직접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민단체 등은 규제 혁파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 중
* 사회적 비용 및 파급효과가 크고, 안전성·윤리 등을 종합고려 필요

□ 추진내용

- (연구 단계) 생명윤리 관련 규제 혁파
 - (배아줄기세포연구) 현재 20개 희귀·난치질환으로 질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범위 확대 검토
 - (유전자치료) 유전질환·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같이 질환 허용범위 확대 방안 검토
* (개선) 질환 제한없이,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히 우수한 효과 예측 시 허용
- (현장 활용 단계) 미래 유망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 방법 개선
 - 미래 유망기술(로봇·AI·IT·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의 신속 도입을 위해 가치성을 반영한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 구축 검토
* (미래 유망기술) 안전성·유효성 문헌 외에 가치성도 검토하여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 별도 평가체계를 통해 도입된 미래 유망기술은 3~5년 간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며 쌓은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 향후 계획

- (연구) 생명윤리 민관협의체를 통해 배아줄기·유전자가위 관련 사회적 논의
- (현장 활용) 미래 유망기술 가치 반영 평가방안 연구, 관련 평가 체계 마련(~'18.상)
 - 가치 반영 평가 시범사업 수행('18.하), 본 사업 실시('19)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 규제혁파 추진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18.6)

○ 벤처투자 관련 체계·제도 일원화

- 유사한 성격의 창업투자조합(창업법)과 벤처투자조합(벤처법)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여 통일된 규정을 적용

* 최소설립자본금 : (현행) 창투조합 20억원 벤처투자조합 30억원 → (개선) 벤처투자조합 20억원

○ 보다 자유로운 진입·투자를 위한 벤처투자시장 규제혁파

- 창투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창투사 투자대상 확대 및 의무투자비중 차등화**

* (자본금) 50억원 → 20억원, (전문인력) 자격증, 학위 소지자 → 창업·투자 경험

** 일부 사행성 업종 등만 제외한 쏠업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일률적인 의무투자 비중(40%)을 창투사 규모별로 차등화

□ 규제샌드박스 추진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발의, '18.6)

○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신기술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기술 등을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에 규제샌드박스 도입

- 그레이존 해소, 실증·사업화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화 추진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특구운영 컨설팅 등 행·재정적 지원제도 도입

※ 현재 전문가 등 의견수렴 중이며, 연구용역을 거쳐 법안발의 예정('18.6)

□ 설립개요

◇ 차세대 성장 엔진의 핵심인 융합기술개발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대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설립한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융합기술전문연구기관**

- 설립일 : 2008. 3. 21.
- 설립배경 : ① 융합기술 연구개발 ② 산학연 공동연구 및 창업기업 지원
③ 융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④ 지역공헌사업
- 조직 : 3개 본부, 4개 연구소 (나노, 바이오, 스마트시스템, 범학문통합연구소)
- 직원현황 : 134명 (겸임교수 및 연구과제 참여인력 포함)

□ 주요 사업

○ 융합기술 연구개발

- 융합기술 신시장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융합기술 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연구 수행
-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융합기술 연구개발 강화

* 2017년 대표 연구분야

-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연구
- 1인승 SPM, 자율주행차 개발에 이어 자율주행셔틀 개발
- 차세대 의료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한 바이오융합기술 연구
- 한국형 암 정복 위한 혁신적 치료법 신기술 선도
- 암 세포 전이물질 세계 최초 규명
- 세계 최초 전자파 차단 스마트 콘택트렌즈 개발
- 세계 최초 인공 뇌 구조 모사 3D 구조체 합성 성공 등

* 2018년 연구방향

- 4차 산업혁명 대응 공공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융합기술연구개발 수행
- 분야 : 지능형 헬스케어, 차세대 교통시스템, 미래형 도시설계 분야

○ 연구성과 확산사업

- 기업과의 공동연구, 혁신기업 기술창업, 기술이전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기술교류회, 포럼,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한 산학연 기술교류지원
- 융합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양성 및 융합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대학생 인턴프로그램, 융합문화콘서트)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

- 경기도내 대학(원)생의 혁신적 창업 아이템을 발굴, 성공창업을 돕는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참고자료: 연구성과 관련사진

1. 자율주행 기술 (1인승 SPM,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셔틀)



2.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